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 제도 신설 등 >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74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 제도 신설 등(안 제3조의11 신설 등)	4
2. 장애인배우의 정보 관리 등(안 제14조 등)	10
3. 장애인배우 출연 영화제작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22조의2 신설) ..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호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3. 11.

다.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실제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특히 일반 스태프가 장애인 배우를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촬영 지연 등은 영화제작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워 장애인 출연을 기피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주연이나 조연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속 일상적인 배경이나 단역 등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노출되는 경우에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제작업자는 장애인배우의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도록 함(안 제3조의11 신설).

나.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영화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지원이 다른 법률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의12 신설).

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의 영화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고, 영화제작자가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추천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라. 영화제작업자가 영화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 비용 등은 영화
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
3 신설).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 제도 신설 등(안 제3조의11 신설 등)

개정안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제작업자로 하여금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 배우에게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②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 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영화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 지원을 제한하며, ③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배우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11(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 배우(이하 “장애인배우”라 한다)에게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이하 “장애인접근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장애인접근조정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휠체어 진입로 사전 확인, 촬영 세트장 내 이동 보조 및 동선 확인 2. 장애인배우의 접근 가능한 화장실 및 휴게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 관리 3. 장애인배우와 영화제작업자·영화

현행	개정안
<신설>	<u>감독 등과 연출과정의 의사 및 의도 전달 등 소통 지원</u> <u>4. 장애인배우의 촬영 시 심리적 안정 지원</u> <u>5. 장애인배우의 장애 유형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u> <u>6. 위기 상황 발생 시 장애인배우의 안전 확보 등 전문적 조치</u> <u>7. 그 밖에 장애인배우의 촬영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자격, 선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조의12(중복지원의 제한) ① 국가는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영화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대한 복지 관련 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특수 비용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

현행	개정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10의2. (생략) 11. · 12. (생략) ② (생략)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0의3.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 지원 10의4. (현행 제10호의2와 같음) 11.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5년 249만 406명에서 2024년 263만 1,35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¹⁾에서도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장애인의 영화·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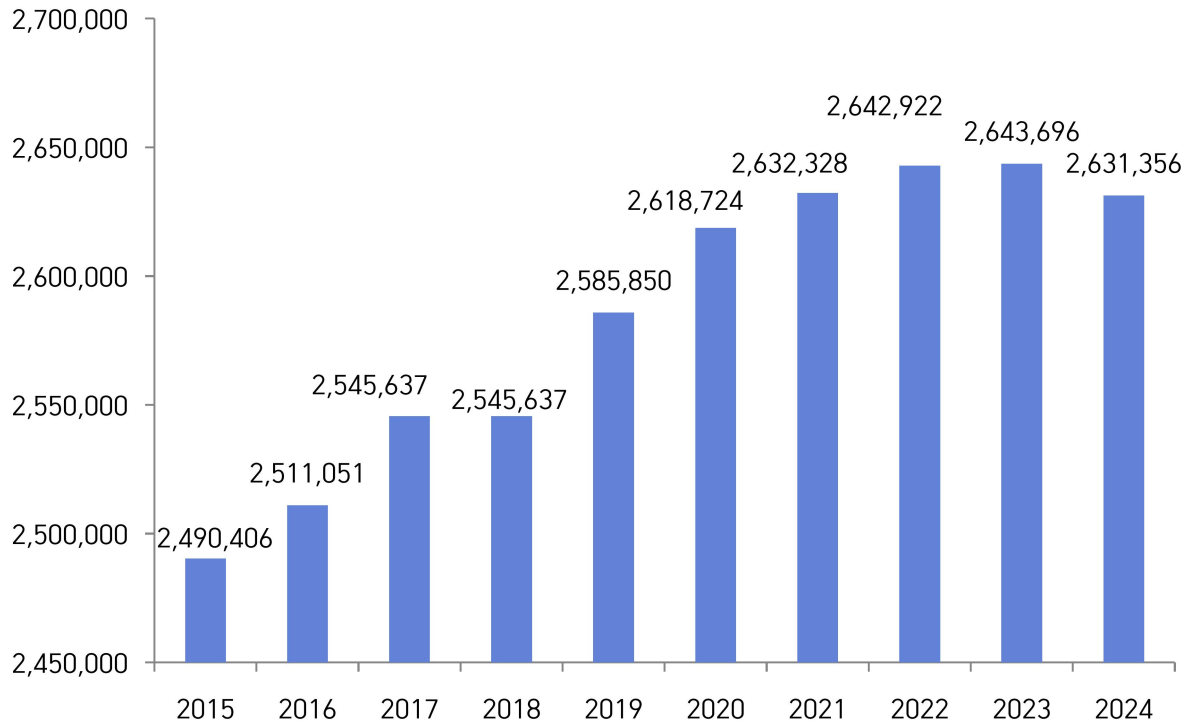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5~2024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 >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은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제작업자로 하여금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 배우(이하 “장애인배우”라 함)에게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체어 진입로 사전 확인, 장애인배우의 촬영 시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

(이하 “장애인접근조정자”라 함)를 두도록 하고(안 제3조의11 신설),

②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영화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대한 복지 관련 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안 제3조의12 신설),

③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개정안은 장애인배우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 접근성을 개선하며,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영화제작업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배우의 출연 기회를 넓히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의무화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작사에 대한 인력 채용 의무화는 비용 부담 및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화보다는 기관 내 관련

규정 정비 및 홍보 등을 통한 업계의 자율적 참여 유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② 장애인배우 출연 지원 및 중복 지원 제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므로 과도한 인력과 예산이 소모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③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등의 지급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의 세부 지출 항목을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침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장애인배우의 정보 관리 등(안 제14조 등)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장애인의 영화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7.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u> 5.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2(장애인배우의 정보 관리 등)</u> <u>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의 영화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u> <u>② 영화제작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추천 또는 지원 요청을 받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추천 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u>

현행	개정안
	<u>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u> <u>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추천 또는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장애인의 영화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화제작자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추천 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추천 또는 지원 요청을 받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장애인배우와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매칭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영화 출연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영화 제작 현장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정보 수집·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작사의 지원 요청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것은 기금 상황, 지원 사업과의 연관성, 행정의 유연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장애인배우 출연 영화제작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22조의2 신설)

개정안은 영화제작업자가 영화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영화제작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제작업자가 영화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영화 제작 시 장애인 출연 및 일상적 노출에 대한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미디어 내 장애인 가시성을 제고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의 수혜 대상이 ‘콘텐츠제작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영화제작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사업의 심사과정에서 성별, 지역, 연령, 계급, 장애 등 과소 대표된 집단이 시나리오의 주제나 서사, 인물 등에 반영된 경우 다양성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표> 2025년 다양성 지수 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가산점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영화화 가능한 자유 소재 및 주제로 순수창작 극영화 시나리오를 선발하는 공모전	총점(최대 100점)에 더하여 5점까지 부여 가능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배우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장애인배우의 출연과 영화 속 장애인의 노출을 늘리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나, 가산점 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보다, ‘장애인 출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같은 포괄적인 문안을 법안에 규정하고, 실무 지침 및 사업 공고를 통해 가산점 배점 등 방안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